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2,576,358	12,077,291
일반회계	364,786,455	10,943,594
특별회계	37,789,903	1,133,697
기타특별회계	37,789,903	1,133,69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2,381	7,571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5,333,888	160,017
수질개선 특별회계	61,524	1,84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440,000	103,200
주차장 특별회계	430,100	12,903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0,591,000	317,730
기반시설 특별회계	782,010	23,4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6,899,000	506,97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사업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86,47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